

「청년살이발전소」 운영사업 협약서

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정릉시장 상인회(이하 “상인회”라 한다.)는 청년살이발전소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“구”와 “상인회”간에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“청년살이발전소” 운영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내용) “구”는 “청년살이발전소”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“상인회”에 아래의 사항을 지원한다.

▷ 사업명 : “청년살이발전소” 운영사업

▷ 사업기간 : 2016. 04. 27. ~ 2016. 12. 31.(9개월간)

단, “상인회”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▷ 사업내용 : “상인회” 사업(실행)계획서 첨부

▷ 지원내역 : 사무공간 및 교육장, 사업비품(별첨)

제3조(협조 및 의무) ① “구”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“상인회”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, “상인회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“상인회”는 청년살이발전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“청년 전용 공간”으로서의 자율성, 공공성, 마을성, 자생성을 실천하고,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.

③ “상인회”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, “사업”을 통해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.

④ “상인회”는 “구”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,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⑤ “구”와 “상인회”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 및 장비의 관리) ① 이 협약에 의하여 “상인회”가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“상인회”는 협약체결 이후에 시설을 개·보수 또는 주요 장비를 설치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“구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도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시설 및 장비의 반환) ①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기간이 만료 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“상인회”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비롯하여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등을 “구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“상인회”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 사업중단 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하고 반납에 따르는 비용은 상인회가 부담한다.

③ “상인회”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 “구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계획서 제출 등) ① “상인회”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“구”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개요 :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, 사업의 필요성, 추진일정 등
2. 사업계획 : 소요예산,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

③ “상인회”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“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정보공개) ① “구”는 청년살이발전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,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“상인회” 개인정보나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.

▷ 명칭 및 대표자(연락처)

▷ 위치, 운영시간, 프로그램 등 운영·관리 사항

▷ 기타 사업 및 운영 결과물 등

② 추가로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
제8조(제출의무) ① “상인회”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등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“구”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상인회”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의 현황 보고서를 “구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구”는 “상인회”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상인회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약정의 변경 및 해지) ① “상인회”는 “구”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본 약정체결 후 “구”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“구”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상인회”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

2. “상인회”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,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

3. “상인회”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“구”가 인정하는 경우

4. 사업의 목적과 달리 청년 전용 공간이 아닌 타 용도로 운영하거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“구”가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“구”는 사업과 관련한 “상인회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“구”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“상인회”에게 요구하거나 “구”의 소속직원 또는 “구청장”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상인회”의

업무상황,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
이 경우 “상인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민·형사 상의 책임)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상인회”가 진다.

② “상인회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 받은 손해배상액을 “구”가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“상인회”는 “구”에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구”와 “상인회”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4 월 25 일

〈“구”〉

단 체 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

대 표 자 : 성북구청장 김 영 배 ①

〈“운영자”〉

단 체 명 : 정릉시장 상인회

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1길 18-19

대 표 자 : 상인회장 백 재 선 ①